

규약(정관)

경북신체장애인협회

경북신체장애인협회규약(정관)

제 정 2022. 12. 06.

개 정 2026. 4. 28.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경북신체장애인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 교육, 문화, 자립생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통합사회 가치를 실현시키며 경상북도 내의 신체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 재활을 도우며,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북도에 두며 경상북도 산하 시·군에 지회(분점)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상북도 장애인 복지에 대한 기본 방침의 수립 및 시행
2.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 옹호 및 인식 개선 활동
3. 경상북도 장애인 인재 양성의 육성 및 지원·관리
4. 경상북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상담·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 사업 전개
5. 경상북도 외 타 시·도 및 해외와의 장애인 복지 교류
6. 경상북도 장애인단체와 연계 참가·주최·주관·후원·지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7.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한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 등
8. 장애인 복지에 관한 홍보 및 각종 복지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행
9. 지역 장애인 복지 정책 실현 및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 및 자문
10. 경상북도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조직 운영
11. 장애인복지사업 및 복지단체 운영 사업
12.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장애인 문화 체육에 관한 사업
13.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

1. 정회원 : 장애인 또는 본회의 목적사업에 열성을 가지고 공헌할 자
2. 준회원 : 정회원의 가족 또는 보호자
3. 특별회원 : 사회 각계의 저명인사 중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4. 후원회원 : 장애인 복지 및 본회 발전을 위해 건축물, 토지, 또는 물품 등을 기부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단 회원의 의무 조항 기피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제외)
2. 협회의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3. 협회의 각종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장애인은 일정 기간 동안 유보할 수 있다.)
5. 정관 및 제 규정과 각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본 회의 회원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협회의 목적을 훼손하거나 명예를 실추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8조(집단 행위 금지)

본 회의 회원은 목적에 위배 되는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5인(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이상

제10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본 회의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선거인은 임원으로 한다.
2. 회장의 선출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① 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회장을 포함한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임원선임)

1.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서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경북신체장애인협회 회장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북신체장애인협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①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②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③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④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대의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해당 시 지부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대의원의 직무)

1. 회장은 경북신체장애인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결위 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 ① 경북신체장애인협회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 ③ 경북신체장애인협회 재산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 ④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경상북도 담당 부서에 보고하는 사항
- ⑤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제14조 (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대의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

1. 이사,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 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2. 경북신체장애인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의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16조 (임원에 대한 징계)

1. 경북신체장애인협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을 징계할 수 있다.
 - ①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해당 단체의 사업 운영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 ② 친족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 ③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 ④ 해당 단체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징계에 관한 사항은 경북신체장애인협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관련 규정이 없을 시 민법 관례 규정을 따른다.

제17조 (감사)

1. 본 단체는 회계 및 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2.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단체의 재산 상태, 회계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필요시 대표자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4.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5. 감사는 단체의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표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6. 본 단체는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외부 감사는 단체의 재산 상태, 회계 처리, 기부금 모금 및 사용내역을 포함한 모든 재정 활동을 검증할 수 있다.

8. 외부 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대표자 및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9. 외부 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단체의 예산에서 지출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 (대의원)

1. 경북신체장애인협회의 대의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경북신체장애인협회 이사회에서 임면 의결한 자(시군지회의 장)
 - ② 경북신체장애인협회 직접선거로 선출된 자
 - ③ 이사
2. 해당 시·군 지회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 등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3일 전에 경북신체장애인협회에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 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1) 동일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2)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총회에 대리 참석이 불가하다.

제19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의원에 또는 제3항에 의한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경북신체장애인협회 제 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사업 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총회의 종류)

1. 경북신체장애인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 ③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 ④ 제13조 제5항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2항 2호부터 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 요구를 한 이어나 대의원이 회장에게 요청한 총회소집 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기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제3항과 관련하여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5.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6.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 (의장)

1.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되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2.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이어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 대의원의 의결로 의장을 선출한다.
3. 제1항에 의한 의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2항에 의한 의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22조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
3. 내우, 외환, 중대한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의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총회 참석자의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의 출석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원격 통신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23조 (대의원의 불신임)

1. 총회는 대의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임할 경우에는 대의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 부 대의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대의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대의원이 구속기소된 경우에는 경과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3.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4.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대의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24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대의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대의원 또는 임원은 해당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총회 참석 대의원 전원이 찬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 의 구성 및 기능)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사업계획 결과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 ② 임원 및 각 지회 지회장 임면에 관한 사항
 - ③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⑤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⑥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⑦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 ⑧ 기타 중요사항

제26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3. 내우, 외환, 중대한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참석자의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의 출석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원격 통신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27조 (이사회 의 소집)

1.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되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 ② 제13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 · 일시 ·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29조 (이사회 의 특례)

1.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대의원은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이사회에 참석 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2. 제1항에 의한 대의원은 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에 산입한다.

제30조 (각종 위원회)

1. 필요시 사업 수행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치할 수 있다.
2.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31조 (자산의 구분)

경북신체장애인협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소유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회비
4. 정부, 공공단체, 중앙협회 등의 보조금 및 각종 지원금
5. 사업 수익금
6. 기부금 및 후원금
7. 기타 수입금

제32조 (자산의 관리)

1. 자산의 관리는 회장이 하되,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 협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3. 본 협회의 수입은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33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사업계획 및 수입 · 지출 예산안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34조 (수익사업)

1. 목적 : 본 단체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수익사업의 범위 : 신체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 운영, 출판, 교육 서비스, 제조 및 판매 사업, 문화 콘텐츠 사업 등이다.
3. 회계분리 : 수익사업 회계는 공익사업 회계와 별도로 관리한다.
4. 수익금의 사용 : 수익금은 개인에게 분배가 불가하며, 전액 공익사업에 사용한다.
5. 수익사업의 개시 혹은 변경 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수익사업은 세법에 따른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내부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7. 수익사업의 예산과 결산의 내용은 매년 회계 종료 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제35조 (기금 및 적립금)

이사회 승인을 얻어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36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회계감사)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장 사무국

제38조 (사무국)

경북신체장애인협회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직무를 관장하며,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9조 (직제 및 경영공시)

1.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이를 따로 정한다.
2. 사무처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관련 규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 (규약 (정관) 및 제 규정 제 · 개정 승인)

경북신체장애인협회의 규약 (정관) 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북신체장애인협회 이사회 의결로 제·개정을 승인한다. 또한, 규약 (정관) 변경 또는 수정 시에도 이와 같다.

1. 이외에 경북신체장애인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제41조 (규약의 해석)

1. 규약은 경상북도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경북신체장애인협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된 규약에 대하여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경북신체장애인협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규약 (정관) 및 상위 규정 등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 사항을 제한받거나 지회 승인이 철회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 (정관) 은 경북신체장애인협회 이사회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의원) 경북신체장애인협회 대의원 명부 및 사용할 인장은 별표1 내지 2과 같다.

제 정 2022. 12.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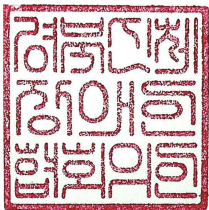
개 정 2026. 4. 28. 명칭 변경

별지1.

경북신체장애인협회 임원 명부

직 위	성 명	주 소
회장	임 한 준	경북 청송군 감연리 아방실길 11 영광타운 401호
부회장	김 상 구	경북 영덕군 영덕읍 우곡길 27 동보팰리스 1103호
이사	이 영 재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부동로 37
이사	김 현 영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집골길 1-6
이사	고 진 우	경북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334
감사	이 애 영	경북 안동시 퇴계로 233-22 대림플러타운 1106호
감사	김 선 연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이전 앞길 11-2

경북신체장애인협회 사용할 인장

직 인	대표이사의 인	계 인
		

경북신체장애인협회

경북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334,1층

전화 : 054)873-8861

팩스 : 054)873-8862